

의안번호	2205053
의 퇴 인	박덕흠의원
회 답 일	2024. 11. 22.
추 계 번호	24B43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2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2. “ <u>농어업정책보험²⁾</u> ”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나.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다. <u>농업수입안정보험</u> :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정책보험의 종류에 ‘ <u>농업수입안정보험</u> ’ 추가	의무규정
2	안 제4조(정책보험의 종류 등)	<u>정책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u>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u>농업수입안정보험</u>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함 ※ 농어업정책보험의 종류에 ‘ <u>농업수입안정보험</u> ’ 추가	의무규정
3	안 제5조제1항 제1호의3 신설 (보험목적물)	<u>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정책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함(제1항)</u> <u>1의3.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 및 임산물</u>	의무규정
4	안 제19조(재정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u>정책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정책보험사업자의 정책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u> 이 경우 <u>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제1항)</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제2항)</u>	의무·재량규정
5	안 제27조제1항 신설(시범사업)	<u>정부는 정책보험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u>	재량규정

1) 개정안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면서,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2호(정의)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정책보험의 종류 등)	
3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3 신설(보험목적물)	
4	안 제19조(재정지원)	
5	안 제27조제1항 신설(시범사업)	

2. 상세 사유

가.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참고자료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개요

2)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면서,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참고자료 3] 가축재해보험 사업 개요

[참고자료 4] 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참고자료 5] 양식어업재해보험 개요

[참고자료 6]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참고

□ 최근 4년(2021~2024년)간 농어업재해보험 예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국비 지원율은 약 50%, 지방비 지원율은 보험별로 약 13~40% 수준임

[표 1] 농업재해보험 및 양식어업재해보험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농림 축산 식품부	농업재해 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351,871	353,707	508,820	434,451 ¹⁾	607,729	531,801	535,584
		가축 재해보험	119,093	117,708	119,093	113,684	119,093	110,553	112,220
		농업수입 보장보험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8,100
		가축질병 치료보험	2,000	1,549	2,000	1,778	1,600	1,593	1,200
		소계	475,464	475,464	632,413	552,413	730,922	646,447	657,104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83,691	83,691	109,791	109,791	98,811	98,811	98,811
	소계		559,155	559,155	742,204	662,204	829,733	745,258	755,915
해양 수산부	양식어업 재해보험	순보험료지원	16,267	16,267	15,295	12,443	13,899	13,899	15,285
		운영사업비 지원	11,869	11,792	9,603	8,891	8,727	8,124	8,422
		양식보험사업 관리위탁	153	230	403	443	403	356	403
	소계		28,289	28,289	25,301	21,777	23,029	22,379	24,110

주: 1) 농특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부분에 대해 '23년 이월 및 집행 완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나. 농업수입안정보험 실시—정의(안 제2조제2호), 정책보험의 종류 등(안 제4조), 보험목적물(안 제5조제1항제1호의3 신설), 재정지원(안 제19조), 시범사업(안 제27조제1항 신설)

-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면서,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표 2]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제명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정책보험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u>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u>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u>피해</u> 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u>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u>피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u> 하기 위한 농어업정책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법적 근거 마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정책보험”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나.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다. <u>농업수입안정보험</u> : <u>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u>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이며,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 비해, 농업수입안 정보험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감소분을 보상하여,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더 큼
 - －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가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를 지원
 - － (농업수입안정보험)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收入)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
 -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안을 전년 81억원 대비 1,997억원(2465.6%) 증가한 2,078억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전년 대비 514억원(9.6%) 감소한 4,842억원으로 편성함
 - －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국비 지원율은 약 50%, 지방비 지원율은 보험별로 약 13~40% 수준임

[표 3] 2025년도 농업재해보험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증감(B-A)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A)	예산안(B)		증감률 ((B-A)/A)
농업재해보험 (1031-300)	농작물 재해보험	535,584	484,182	△51,402	△9.6%
	가축 재해보험	112,220	109,930	△2,290	△2.0%
	농업수입 보장보험	8,100	207,817	199,717	2465.6%
	가축질병 치료보험	1,200	—	△1,200	△100.0%
	소계	657,104	801,929	144,825	22.0%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98,811	92,787	△6,024	△6.1%
합계		755,915	894,716	138,801	18.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2024.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중복 가입이 불가하여, 실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에 연동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게 됨
 - 특히 2025년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대비하여 예산안이 대폭 증액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추계기간 5년 동안 다음 사항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실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률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 지원 규모
 -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률에 연동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국고 및 지방비 지원 규모
 - 보험사업자에 지원하는 농작물수입안정보험 운영비*
 - * 운영비는 총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편성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8.7% 편성)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을 농업정책 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향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률 및 이와 연동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2024년 기준>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9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3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과, 벼(일반벼/조사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0%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매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보장보험 (9품목)	콩, 포도, 양과,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보리, 옥수수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가축질병치료보험 (1품목)	소	영업보험료의 5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28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1품목)	김, 명게, 뱀장어, 미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 도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³⁾

□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01	<u>사과, 배</u>	2
2002	<u>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u> (온주밀감류/만감류)	6
2006	<u>떨은감</u>	7
2007	<u>밤, 참다래, 자두</u>	10
2008	<u>감자</u> (봄감자(경북, 충남)/ <u>고랭지감자/가을감자</u>), <u>콩, 양파, 고추, 시설투(수박)</u>	15
2009	<u>고구마, 옥수수</u> (일반옥수수/조사료용옥수수), <u>마늘, 매실, 벼</u> (일반벼/조사료용벼)	20
2010	<u>시설투(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u>	25
2011	<u>시설투(꽃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u> <u>복분자</u> (고창, 정읍, 순창, 함평, 담양, 장성)	30
2012	<u>인삼, 시설투(멜론, 파프리카), 오디</u> (전북, 전남, 상주, 안동), <u>차</u> (보성, 광양, 구례, 하동)	35
2013	<u>시설투(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u>	40
2014	<u>시설투(배추, 가지, 파)</u>	43
2015	<u>시설투(무, 백합, 카네이션)</u>	46
2016	<u>밀, 시설투(미나리), 오미자, 양배추</u> (제주, 무안)	50
2017	<u>시설투(쑥갓), 무화과</u> (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u>유자</u> (고흥, 완도, 진도, 거제, 남해, 통영)	53
2018	<u>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u> (전남, 제주), <u>브로콜리</u> (제주, 충북)	57
2019	<u>배추</u> (<u>고랭지</u> / 봄배추 - 평창, 영양, 해남 / 월동 - 해남 / 가을 - 괴산, 해남, 영양), <u>무</u> (<u>고랭지</u> / 가을 - 고창, 영암, 무안, 예천, 나주, 당진, 홍천, 충주 / 월동 - 제주), <u>당근</u> (제주), <u>단호박</u> (경기, 제주), <u>파</u> (<u>대파</u> / 쪽파·싹파 - 아산, 보성)	62
2020	<u>호두</u> (김천), <u>팥, 시금치,</u> <u>보리</u> (해남, 보성, 김제, 군산, 밀양), <u>살구</u> (영천)	67
2023	<u>귀리</u> (강진, 해남), <u>시설투(감자)</u> (김제, 부안), <u>양상추</u> (횡성, 평창)	70
2024	<u>두릅</u> (순창, 광양, 순천, 하동), <u>블루베리</u> (순창, 담양, 평택, 상주, 의성, 영동), <u>수박</u> (봉화, 안동, 영주, 예천, 고창, 진안)	73
합계	73개 품목 (85개 상품)	

* 밀줄 친 품목은 본사업 품목임

3)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2023.1. 등)

□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축종	누계
1997	소	1
2000	돼지, 말	3
2002	닭	4
2004	오리	5
2005	꿩, 메추리	7
2006	칠면조, 사슴	9
2007	타조, 거위	11
2008	양	12
2009	꿀벌	13
2010	토끼	14
2011	관상조	15
2012	오소리	16
합계	16개 축종	

□ 수입보장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15	콩, 포도, 양파	3
2016	마늘	4
2017	고구마, 가을감자	6
2018	양배추	7
2024	보리, 옥수수	9
합계	9개 품목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⁴⁾

□ 보험 대상품목(총 28개)

- **본사업 품목(17):**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17):** 전국
- **시범사업 품목(11):** 보험의 효용성·실시 가능성 등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시범사업 품목별 사업지역 현황>

품목명	사업지역
김	전남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함평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경기 안산시, 화성시/ 전북 군산시, 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화군(단, 팽생이 모자반 및 유빙 특약은 특정지역만 가입 가능)
멍게	경남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미역	전남 고흥군, 진도군/ 부산 기장군/ 경남 통영시, 거제시
뱀장어	전남 영광군, 함평군, 강진군, 무안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충북 충주시
송어	강원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삼척시, 철원군, 횡성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충북 보은군,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경기 가평군
미더덕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터봇	제주도
메기	충남 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향어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전남 함평군
전복종자	전남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4)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제1차(‘23~’2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2023. 6. 등)

[참고자료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01~)

□ (대상품목) 73개 품목 및 농작물 재배시설

* ('01년) 2개(사과·배) → ('18) 57 → ('19) 62 → ('20~'22) 67 → ('23) 70
→ ('24) 73

□ (사업내용)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지원

□ (사업예산) '24년 6,344억원(미지급금 포함)

(단위: 억원)

구분	'20	'21	'22	'23	'24	'25안
합계	4,717	4,356	6,719	7,065	6,344	8,947
보험료지원	3,598	3,519	5,621	6,077	5,356	8,019
운영비지원	1,118	837	1,098	988	988	928

□ (가입실적) '12년 이후 가입 증가*, '23년 가입률 52.0% 수준

* ('12) 13.6% → ('19) 38.8 → ('20) 45.0 → ('21) 49.4 → ('22) 49.9 →
('23) 52.0

□ (지급실적) '01~'23년까지 총 6조 2,226억원('21~'23년 2조 1,340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위험 대비 농가의 경영안정 장치로서 역할

○ (보험금) '23년 19.6만 농가 대상 보험금 1조 42억원 지급

* ('19) 8,980억원 → ('20) 10,158 → ('21) 5,740 → ('22) 5,558 → ('23) 10,042

○ (손해율) 연도별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01년 이후 '23년까지 누적 손해율은 99.3% 기록

* ('19) 186.2% → ('20) 150.6 → ('21) 74.2 → ('22) 65.0 → ('23) 107.3

[참고자료 3] 가축재해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97~)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대상축종) 가축(16축종) 및 축산시설물

*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 (사업내용) 영업보험료(순보험료+운영비)의 50%(가입자별 최대 5천만원)

- (사업예산) '24년 1,122억원

(단위: 억원)

구분	'19	'20	'21	'22	'23	'24	'25안
예산	1,206	1,122	1,191	1,191	1,191	1,122	1,099

- (보장내용)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손실 보장

* 자기부담비율(소·말 20%, 가금·돼지 5%)을 제외하고 100% 보상

- (가입실적) '23년 기준 가입률 94.4%(가입두수 290,820천두) 수준

* ('01) 21.7% → ('20) 92.8 → ('21) 93.7 → ('22) 94.7 → ('23) 94.4

- (지급실적) '97~'23년까지 총 1조 9,265억원('21~'23년 4,789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피해 손실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 (보험금) '23년 16개축종, 10.7천 농가, 보험금 1,648억원 지급

* ('19) 1,743 → ('20) 1,477 → ('21) 1,462 → ('22) 1,679 → ('23) 1,648

- (손해율) '18년 이후 손해율은 점차 안정화 추세

* ('18) 156.1 → ('19) 99.6 → ('20) 80.8 → ('21) 78.9 → ('22) 93.0
→ ('23) 94.2

[참고자료 4] 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15~)

□ (대상품목) '24년 9개 품목

* ('15) 3개(콩·포도·양파) → ('16) 4(+마늘) → ('17) 6(+고구마·가을감자)
→ ('18~) 7(+양배추) → ('24) 9(+옥수수·보리)

□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지원

□ (보장피해)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피해), 화재, 가격하락 등

□ (소요예산) '24년 81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안
예산 (미지급금)	3,159	4,649	4,649	5,149	5,100 (17년 142)	5,257 (18년 108)	2,500	2,500	2,500	8,100	207,817
국고지원	4,133	3,950	17,881	5,257	5,100	4,432	2,500	2,500	2,500	—	—

□ (가입실적) '15~'23년 동안 총 15,895ha, 17,838 농가 가입

○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 저조

* 연도별 가입률: ('15) 12.4% → ('17) 20.3 → ('19) 3.7 → ('21) 3.0
→ ('22) 3.2 → ('23) 3.3

○ '23년 기준 총 7개 품목 1,233ha, 1,652 농가 가입

□ (지급실적) '15~'23년 동안 총 12,511 농가에 보험금 891억원을 지급 하였으며, 누적 손해율은 138.8%

* 연도별 손해율: ('15) 7.7% → ('17) 31.5 → ('19) 185.6 → ('21) 67.8
→ ('22) 110.0 → ('23) 150.9

* 연도별 보험금: ('15) 4억원 → ('17) 77 → ('19) 109 → ('21) 25 → ('22) 40
→ ('23) 59

○ '23년 기준 총 7개 품목 1,346 농가에 보험금 58.6억원 지급

[참고자료 5] 양식어업재해보험 개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현황) 재해피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입 ('08), 거대재해의 경우 국가재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위험 분담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보험사업자: 수협중앙회
- 대상품목(28개)
 - 본사업: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어류 등 17개 품목
 - 시범사업: 김, 미역, 멥게 등 11개 품목
- 보상재해
 - (주계약)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이상조류, 저수온 등
 - (특약) 전기장치위험, 이상조류·고수온·저수온·수질, 조수, 양식시설물
- 보장수준
 - 수산물: 산지가가격의 85~90% 수준으로 보상(보험가입금액 이내)
 - 시설물: 원상복구비 전액(보험가입금액 이내)

- (지원) 보험가입 유도 및 어업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 (국비 50%, 지방비 20~30%) 및 운영비 전부(100%)를 지원

* 예산: ('20) 268억원 → ('21) 283억원 → ('22) 253억원 → ('23) 230억원

- (가입) 정부가 지원하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物的)보험이고, 가입여부는 양식어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보험

*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人的보험은 가입의무 부여(ex 산재보험, 어선원보험)

** 가입자 수(가입률): ('20) 3,744어가(39.1%) → ('21) 2,682(28.0)

→ ('22) 2,733(37.0) → ('23) 2,936(39.8)

- 추진절차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를 통해 상품개발, 가입 및 보험금지급 등 일련의 절차 수행, 우리부에서 관리·감독 및 국고 보조

[참고자료 6]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636,727	547,183	52.0	1,039,681	506,116	48.7%	130,793	273,302	38.9%	129,469	12.5%	163.3	20.3	215,368	1,004,249
2022	609,793	512,995	49.9	949,656	466,677	49.1%	116,121	247,167	38.3%	119,692	12.6%	155.7	19.6	162,232	555,777
2021	594,250	497,884	49.4	848,524	417,546	49.2%	100,073	213,311	36.9%	117,595	13.9%	142.8	19.8	172,822	573,989
2020	550,174	440,173	45.0	722,223	355,306	49.2%	84,360	180,563	36.7%	101,994	14.1%	131.3	18.5	225,240	1,015,827
2019	456,024	339,582	38.8	511,146	252,154	49.3%	62,068	123,237	36.3%	73,688	14.4%	112.1	16.2	190,492	898,048
2018	376,593	275,133	32.9	550,149	271,334	49.3%	57,973	126,858	33.6%	93,984	17.1%	146.1	25.0	85,099	534,450

○ 가축재해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영업 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천두당 영업 보험료 (만원)	천두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290,820	36,333	94.4	214,047	103,491	48.3%	8,071	18,787	12.5%	83,697	39.1%	73.6	28.8	41,967	164,786
2022	288,293	34,023	94.7	219,002	105,474	48.2%	7,929	18,948	12.3%	86,651	39.6%	76.0	30.1	39,181	167,904
2021	285,075	22,791	93.7	230,330	110,741	48.1%	7,859	17,770	11.1%	93,960	40.8%	80.8	33.0	34,600	146,247
2020	276,486	21,760	92.8	225,706	107,528	47.6%	7,373	16,697	10.7%	94,108	41.7%	81.6	34.0	34,739	147,730
2019	284,785	21,448	93.3	214,860	105,619	49.2%	6,915	15,187	10.3%	87,139	40.6%	75.4	30.6	35,996	174,302
2018	278,139	19,706	93.0	187,405	92,003	49.1%	5,400	12,470	9.5%	77,531	41.4%	67.4	27.9	32,356	239,275

○ 수입안정보험(구 농업수입보장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1,233	1,652	3.3	4,299	2,149	50.0%	488	1,185	38.9%	476	11.1%	348.7	38.6	1,507	5,858
2022	1,141	1,566	3.2	4,021	2,011	50.0%	473	1,093	38.9%	445	11.1%	352.4	39.0	1,313	4,020
2021	1,007	1,457	3.0	3,946	1,973	50.0%	442	1,029	37.3%	502	12.7%	392.1	49.8	1,024	2,460
2020	1,561	2,006	4.2	6,638	3,319	50.0%	846	1,624	37.2%	849	12.8%	425.2	54.4	1,153	3,451
2019	1,207	1,643	3.7	6,579	3,290	50.0%	776	1,686	37.4%	828	12.6%	545.2	68.6	1,662	10,912
2018	2,121	1,979	7.3	7,291	3,646	50.0%	821	1,592	33.1%	1,233	16.9%	343.8	58.1	5,595	49,763

○ 가축질병치료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가입 률 (%)	영업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천두당 영업보험 료(원)	천두당 농가부담보 험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 금 (B)	국고지원 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부 담 (E)	농가부 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39	748	7.3	3,182	1,591	50%				1,591	50%	81,747,021	40,873,510	33,503	2,862
2022	44	872	8.3	3,555	1,778	50%				1,778	50%	80,549,214	40,274,607	32,129	2,826
2021	41	849	9.1	3,096	1,548	50%				1,548	50%	76,300,873	38,150,428	27,873	2,502
2020	32	687	7.1	2,501	1,250	50%				1,250	50%	79,154,851	39,577,238	19,700	1,715
2019	31	573	13.3	2,268	1,134	50%				1,134	50%	72,942,016	36,483,340	7,796	717
2018	7	176	6.8	537	268	50%				268	50%	71,677,662	35,838,838	63	7

주: 1)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시범사업지역 지자체와 가입영업점(농축협)에서 지방비를 직접 정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지방비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단위: 호, 백만원. 신계약 기준)

연도	가입 어가수 (호)	보험가입 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순보험료)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²⁾		어가당 순보험료 (천원)	부가 보험료 (국고지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어가부담 (E)	어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2,936	39.8	29,339	14,728	50	3,463	5,847	32	5,301	18	1,806	6,225	238	10,558
2022	2,733	37.0	24,349	12,424	51	2,803	4,903	32	4,219	17	1,544	4,638	377	9,564
2021	2,194	29.7	20,079	10,013	50	—	—	—	10,066	50	4,588	3,749	238	10,762
2020	2,682	28.0	24,557	12,278	50	—	—	—	12,279	50	4,578	3,642	806	33,195
2019	3,744	39.1	32,820	16,410	50	—	—	—	16,410	50	4,383	6,380	2,617	123,774
2018	4,250	44.3	41,981	20,990	50	—	—	—	20,991	50	4,939	10,359	1,275	75,775

주: 보험료는 환급금이 차감된 금액이며, 보험금은 지급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임

1) '22년 이전 지방비지원의 경우 지자체와 회원조합이 수기 정산하여 실지원금 파악이 어려우며, '22년 이후 국고지원과 함께 즉시 지원하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
를 통해 실지원금 확인 가능

2) '22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